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2년 9월 16일
의회 운영 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9월 6일, 도병두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6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2022년 9월 16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도병두 의원)

가. 개정이유

-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의 인영을 개정하여 관련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- 공인의 인영을 한글로 변경하여,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구민친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공인의 사용과 등록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 공인 신설(안 제2조제2항)
- 공인의 인영을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모양으로 변경(안 제3조제2항)
-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자구 정비(안 제3조제3항 및 안 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김하영

나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안은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에 따라 금천 구의회 공인의 인영을 한글로 변경하여 구민이 읽기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○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 공인 신설

“의회 인사위원회”및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”추가

(안 제2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 각각 신설)

- 공인의 인영을 한글로 변경

“전서체”에서“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모양”으로 변경

(안 제3조제2항)

- 현행 조례의 일부 용어 등 정비(안 제3조제3항 및 안 제6조)

※ 부칙에 경과규정을 둠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공인 (전자이미지공인 포함)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.

③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사용중인 공인 (전자이미지공인 포함)은 구보에 공고된 것으로 본다.

○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,

한글 사랑을 실천하고 전통문화를 살려 아름답고 읽기 쉬운 글자체로 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, 상위법령 및 다른 법규와의 관계에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